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11

발의연월일: 2020. 9 11.

발 의 자:최종윤·송재호·조승래

최혜영 · 김진표 · 남인순

인재근 • 이용빈 • 임종성

허종식 · 정춘숙 · 양정숙

강선우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대통령령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위생등급 평가의 투명성·객관성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 로 정하는 기관의 고유한 사업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법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 증원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2 제10항).

참고사항

이 법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81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제10항 전단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"를 "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의2(식품접객업소의 위생	제47조의2(식품접객업소의 위생
등급 지정 등) ① ~ ⑨ (생	등급 지정 등) ① ~ ⑨ (현행
략)	과 같음)
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ㆍ도	10
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	
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	
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	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
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	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
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예산	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
을 지원할 수 있다.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